광주 일반고 기숙사 성적 우수자 38%

사회적통합대상자는 3.8% 불과, 기준 미달

시민단체 "실제 필요 학생들 위한 노력해야"

광주지역 일반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사자 중 내신 1·2등급자의 비율이 37.9%로 확인됐다. 반면 사회적통합대상자는 3.8%에 불과했다.

3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통합대상자 인원은 2017년 7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은 기숙사를 운영하는 28개 일반고의 입사자 정원은 2872명인데 사회적통합자는 3.8%인 11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7월 사회적통합대상자 5%에 비해 더 낮아진 수치다.

각 학교의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보면 기숙사 운영학교는 입사자 선발 시 사회적 통합대상자는 정원의 10%, 원거리 통학자는 5%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회적통합대상자를 정원의 10% 이상 선발한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일반고 28개 학교 중 3개 학교로 나타났다.

반면 원거리통학자는 9.8%인 282명으로 나타나 2017년 7월의 10.3%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정원 기준보다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두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 인원은 각 학교의 기숙사 운영규정을 근거해 선발하는데 대다수의 고교가 학업성적 우수자를 기숙사 입사자로 선발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광주 28개 학교 기숙사 인원(2·3학년)에 대한 내신 등급을 살펴본 결과 1등급은 13.9%, 2등급은 24%로 나타났다.

시민모임은 "상당수의 기숙사 운영학교가 소위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통학대상자 등 실제로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 기숙사에 성적우수자를 몰아넣다 보니 시험문제 유출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며 "광주시교육청도 이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 오늘 실시

오는 11월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 격인 9월 모의평가가 4일 실시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를 이날 전국 2101개 고등학교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과 가장 유사한 시험이다.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대부분 응시해 자신의 전국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수시·정시 지원의 기준이 된다. 올해 수능 난이도를 예상할 수 있는 시험이기도 하다. 평가원은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해 수능 난이도를 조정한다.

9월 모의평가에는 지난해 9월보다 5만1556명 감소한 54만9224명이 응시한다. 재학생은 45만9217명이 응시해 지난해보다 5만5219명 줄었다. 반수생 등 졸업생은 3663명 늘어난 9만7명이 응시한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재학생 지원자수가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영역별 응시자는 △국어 54만8422명 △수학 가형 19만760명 △수학 나형 35만4146명 △영어 54만8432명 △사회탐구 29만3281명 △과학탐구 24만3214명 △직업탐구 1만1682명 △제2외국어·한문 5만3629명이다. 한국사는 필수라 모든 지원자가 응시한다. 한국사 시험을 보지 않으면 수능성적 전체가 무효처리돼 성적표를 받을 수 없다.

맛있게 한입 민족 대명절 추석을 열흘 앞둔 3일 오전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에서 레서 판다가 추석맞이 특식을 먹고 있다.

평년보다 더웠던 여름, 역대급 작년 비하면 1.6도 선선

올 여름은 평년(1981~2010년 평균)보다 더운 수준이었지만 기록적인 폭염을 나타냈던 작년과 비교하면 확연히 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이 3일 발표한 '2019 여름철 기상특성'에 따르면 올 6~8월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8.9도로 지난해 평균값인 30.5도보다 1.6도 낮았다.

올해의 평균 최고기온은 기온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한 1973년 이후 1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년 수준(28.4도)보다는 0.5도 높았다.

다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확연히 더위가 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 폭염'을 기록했던 지난해는 평균기온(25.4도·1위), 평균 최고기온(30.5도·2위), 평균 최저기온(21.3도·2위), 일조시간(695.2시간·1위), 폭염 일수(31.4일·1위), 열대야 일수(17.7일·1위) 등 대부분의 수치가 모두 최상위권이었다.

올해 여름은 폭염 일수가 13.3일(15위)로 지난해의 41% 수준에 그쳤고, 열대야 일수도 10.5일(7위)로 작년 대비 59% 정도였다. 다만 일조시간은 631.8시간으로 역대 4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올해는 6월 초에 평년대비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등 더위가 비교적 일찍 시작했지만, 장마가 7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였다. 이후 장마가 끝난 뒤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중부지방보다는 남부지방, 특히 영남 지방에서 폭염이 잦았다. 경북 의성은 올 여름 폭염일수가 총 28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열대야 일수는 제주가 32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폭염일수 14일, 열대야 일수 17일로 지난해의 35일, 29일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전북 부안은 7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13일 연속 폭염이 지속돼 최장 폭염 일수를 기록했고, 전남 여수는 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21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됐다.

뉴스1

태풍 '링링' 7일 목포 서해안 지날 듯

제13호 태풍 '링링'이 대만 동쪽 해상을 경유해 7일 오전 3시쯤 목포 서해안 인근을 지나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2일 필리핀 동부 해안에서 발생한 태풍 '링링'은 3일 오전 3시 기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590㎞ 부근 해상을 지났으며, 오후 3시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남동쪽 약 490㎞ 부근 해상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은 6일 오후 9시쯤 제주 서귀포 서쪽 해상을 거쳐 이튿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를 지나며 태풍의 강도는 '중'에서 '강'으로 세력이 커지고 7일 오전 3시쯤 목포 서해안 인근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 예상경로가 변경될 가능성도 크지만 현재까지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갈 것으로 보여 각종 침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슈 판결

돈 갚지 않는 채무자·가족 인신매매 시도 조선족, 2심도 실형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와 그 가족을 인신매매하려 한 조선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장기 적출 인신매매 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약취·유인)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조선족인 A씨는 지난해 2월 비트코인 투자금을 중국 위완화으로 환전해달라며 B씨와 C씨에게 3억5000만원을 건넸지만 B씨 등은 돈만 들고 도주했다.

A씨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 회수 독촉을 받자 자신의 돈 6000만원으로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B씨 등으로부터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자들과 약속했다.

하지만 B씨 등은 돈을 계속해서 갚지 않았고, A씨는 중국 인신매매업자로부터 "사람의 장기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 가족을 납치해 인신매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B씨 부부에게는 4세 아이가 있었고, C씨 부부에게는 2세 아이가 있었다.

A씨는 SNS에 "장기 팝니다. 2세부터 30대 중반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3개월에 걸쳐 약 120회가량 올리는 등 장기 적출 인신매매 브로커와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결국 인신매매 브로커를 가장해 접근한 경찰관에게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인신매매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그 위법성이 매우 크다"며 "비록 예비에 그쳤지만 피고인은 일가족으로 이뤄진 두 가족 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삼아 장기 적출을 위한 예비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SNS상에 글을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장기매수 희망자들과 접촉한 점, 피해자들에게 범죄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겁을 먹게 해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아무 관련없는 어린아이까지 범행대상을 삼았고, 혐의를 부인하며 경제적 어려움만 호소하고 있다"며 "엄한 처벌로 잘못을 반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